

배포 2024. 2. 6.(화) 08:30

보도시점 (인터넷) 2024.2.6.(화) 행사시작 시
(지 면) 2024.2.6.(화) 행사시작 시

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

-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
- 다양한 지역 중심 교육개혁 선도모델을 발굴·확산하고,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의 활력 회복 기대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‘교육발전특구위원회’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2월 6일(화),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.

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,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.

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진행 중(2023.12.11.~2024.2.9.)으로 각 지역에서는 ‘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’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, ‘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’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육 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.

<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일정 >

- ◆ 1차 지정 : 시범지역 1차 공모(2023.12.11.~2024.2.9.) ⇒ 지정 심사 및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·의결(2024. 2월 중) ⇒ 1차 지정(2024. 2월 말)
- ◆ 2차 지정 : 시범지역 2차 공모 (2024.5.1.~2024.6.30.) ⇒ 지정 심사 및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·의결(2024. 7월 중) ⇒ 2차 지정(2024. 7월 말)

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, 산업계,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* 관련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* 교육발전특구(교육부), 기회발전특구(산업부), 대한민국 문화특구(문화부), 도심융합특구(국토부)

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「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」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,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·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.

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다.”라고 말하며, “교육발전특구 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계획
2.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방안 요약

담당 부서	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	책임자	과 장	최수진 (044-203-63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현 (044-203-6354)

□ 개 요

- 일시 : 2024. 2. 6. (화) 16:30 ~ 18:00 (90분)
- 장소 :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
- 참석 : 교육발전특구위원회, 교육부, 지방시대위원회 등
 - (교육발전특구위원회)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 21명
 - (교육부) 부총리, 교육자치협력과장 등
 - (지방시대위원회)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

□ 안 건

<보고 안건>

- (1호) 「교육발전특구위원회 구성·운영」
- (2호) 「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」

<심의 안건>

- (1호) 「교육발전특구위원회 운영 규정(안)」
- (2호) 「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·운영(안)」

□ 세부 일정

시 각		일 정	비 고
16:30~16:35	'5	▪ 개회	
16:35~16:45	'10	▪ 인사말	부총리, 지방시대위원장
16:45~16:55	'10	▪ 위원장 선출	
16:55~17:55	'60	▪ 회의안건 논의 (총 4건)	
17:55~18:00	'5	▪ 마무리	교육발전특구 위원장

※ 부총리, 지방시대위원장 인사말까지만 언론 공개

□ **주요 정책 방향**

- (지역인재 생태계 조성)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·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
- (공교육 경쟁력 제고)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
- (지자체의 지원 확대)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
- (규제 합리화)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

□ **시범지역 선정 개요**

- (신청단위)

유형	신청 단위	신청 주체
1유형	기초지자체	기초지자체장-교육감
2유형	광역지자체	광역지자체장-교육감
3유형	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	

※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(기초)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

- (지정 지역) 수도권이 아닌 지역

※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4조 준용)

- (지정규모) 시범지역 지정 규모(개수)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,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

- (운영 기간) 3년

-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

※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

□ 시범지역 신청

- (신청방법)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'교육발전특구 협약안'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

※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, 교육청, 이전 공공기관, 기업,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

- (신청내용)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 제안

※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 개선(안)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 실시 예정

□ 지정 절차

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	□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여 공고	교육부
지정 신청	□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▶ 지역협력체 구성·운영 ▶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▶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작성 ▶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▶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으로 지정신청	지자체와 교육청
지정 심사	□ 서면심사가 원칙, 필요 시 대면 및 현장심사 가능	교육발전 특구위원회
심의·의결	□ 특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·의결	지방시대위원회
시범지역 지정	□ 교육부 장관의 시범지역 지정	교육부
시범지역 운영 (3년)	□ 시범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 수립·추진 ▶ 교육부와 시범지역 간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 구체화 ▶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발굴 및 규제 개선 제안	시범지역 지자체와 교육청
		교육부